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33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이용우 · 신장식 · 장철민
민병덕 · 임미애 · 김남희
김남근 · 한준호 · 김 윤
백승아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아울러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할 하등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현행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법 제23조제1항).

이에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를 “모든 국민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① 모든 국민은 -----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		-----		
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		<삭 제>		
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				
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				
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				
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				
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				
비서관 · 비서관 · 비서 · 행정				
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				
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				
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 비				
서관 · 비서, 국회 교섭단체대				
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				

<u>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 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 한다.</u>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 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 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생략) ② (생략)	<u><삭 제></u>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